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98
------------	------

2025년 4월 29일
교 육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27일, 아이수루 의원
2.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3. 상정일자 :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5년 4월 29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이수루 의원)

1. 제안이유

- 2024년 학교 급식 노동자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45건으로, 2020년 34건 대비 5배 가량 증가할 만큼 급식노동자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여전히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신규 충원 및 기존 인력 이탈 등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급식종사자의 부담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급식종사자

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감의 역할 강화는 물론,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장의 역할 강화에 대한 근거 마련

- 또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리실 내 환기설비 등의 설치 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강조하여 환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규정 (안 제1조)
- 기본계획의 수립 시,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여 규정 (안 제5조)
-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하여 규정 (안 제6조)
-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있어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해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강조하는 등 근거 마련 (안 제9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27일 아이수루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498호로 발의되어 2025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

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여전히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신규 충원 및 기존 인력 이탈을 초래하고 있는 급식종사자의 부담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인력 배치·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환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현행 조례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¹⁾
- 그러나 여전히 급식종사자의 근무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개선 조치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표-1]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별 급식종사자 결원 현황’과 같이, 급식종사자 결원율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결원율이 36%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조리실무사 수시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나, 응시율은 20~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2024.7.18. 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2024.9.26. 제명 포함 전부개정)

[표-1]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별 급식종사자 결원 현황 (기준:2025.3.1.)

지원청	조리사				조리실무사			
	정원	현원	결원	결원율(%)	정원	현원	결원	결원율(%)
본청	0	0	0	0.00%	0	0	0	0.00%
직속기관	6	6	0	0.00%	17	17	0	0.00%
동부	65	65	0	0.00%	254	246	-8	3.15%
서부	100	96	-4	4.00%	412	379	-33	8.01%
남부	106	99	-7	6.60%	418	391	-27	6.46%
북부	104	97	-7	6.73%	377	373	-4	1.06%
중부	44	39	-5	11.36%	131	128	-3	2.29%
강동송파	120	112	-8	6.67%	581	447	-134	23.06%
강서양천	103	102	-1	0.97%	487	460	-27	5.54%
강남서초	93	71	-22	23.66%	503	322	-181	35.98%
동작관악	78	71	-7	8.97%	284	259	-25	8.80%
성동광진	63	62	-1	1.59%	235	219	-16	6.81%
성북강북	62	58	-4	6.45%	249	237	-12	4.82%
계	944	878	-66	6.99%	3,948	3,478	-470	11.90%

[표-2] 서울시교육청 조리종사원 채용 현황 (2023년 ~ 현재)

채용공고명	채용 예정인원	응시 인원	응시율 (%)	응시 미달인원	최종 합격인원	최종 계약인원
'22년 하반기(2023.3.1.발령)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지원청별 채용)	499	502	100	0	345	313
'23년 3.1.자 조리실무사 수시 채용 (강동송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별도 채용)	148	37	25	111	37	32
'23년 상반기(2023.9.1.발령)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지원청별 채용)	505	388	77	117	246	223
'23년 9.1.자 조리실무사 수시 채용 (강동송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별도 채용)	180	41	23	139	25	20
'23년 하반기(2024.3.1.발령)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본청 통합 채용)	554	344	62	210	272	260
'24년 3.1.자 조리실무사 수시 채용 (본청 통합 채용)	242	127	52	115	92	88
'24년 상반기(2024.9.1.발령)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본청 통합 채용)	547	317	58	230	251	247
'24년 11.1.자 교육공무직원 수시채용 (강동송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대상 본청 채용)	213	28	13	185	20	18
'24년 하반기(2025.3.1.발령)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본청채용)	542	128	24	414	84	81
'25년 3.1.자 조리실무사 수시 채용 (본청채용)	392	213	54	179	153	143
'25년 5.1.자 조리실무사 수시 채용 (강동송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대상 본청 채용)	315	92	29	223	진행중	

- 이러한 조리종사원의 결원 및 채용 현황은 근무환경의 열악함에 비해 높은 노동 강도를 부담하고 있는 급식종사자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동 개정조례안은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안 제1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며(안 제5조제4항), 급식종사자의 의견수렴(안 제6조제3항) 및 환기설비 설치(안 제9조제1항) 등을 강조함으로써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

1) 목적(안 제1조)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and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동 조례의 목적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1조(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현행 조항(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과 의미 차이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안 제1조는 주체의 태도나 자세를 드러내는 현행 제1조의 문구를 제도나 환경을 설명할 때 더 적절한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인바, 이를 통해 동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를 시민에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2)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제4항은 교육감이 기본계획 수립 시 급식종사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선 현행 조례의 “수렴”은 “의견을 하나로 모아 정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안 제5조의 “반영”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나타내다”라는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수렴”은 의견을 받는 과정을 중시하는 용어이며, “반영”은 결과에 적용하는 것에 더 초점을 가지는 용어라 할 것입니다.
- 물론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조례²⁾에 따라 ‘학교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급식종사자 소속 각 노동조합으로부터 의견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급식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이를 결과에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조례의 법적 구속력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시 급식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할 것인바,

안 제5조제4항은 상황에 맞는 정책 및 개선의 가능성을 높이고 급식종사자의 정책 신뢰도를 보다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입법이라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5조는 교육감의 기본계획 수립시 급식종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표현 방식을 책무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에서 표현할 경우 법적 구속력을 약화시켜 조례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급식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비록 추상적 선언으로 안 제5조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급식종사자 등의 의견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등(안 제6조)에 대한 검토

- 안 제6조제3항은 학교장이 급식종사자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업무 범위 및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체 산업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상황입니다.

[표-3] 서울시교육청 직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³⁾ (2022 ~ 2024년)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현업	급식 ⁴⁾	95	110	145	350
	시설관리	7	8	10	25
	미화	8	14	7	29
	통학차량보조	0	1	1	2
비현업	현업외 교직원	22	34	69	125
계		132	167	232	531

-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및 현업근로자 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학교로 찾아가는 산업보건의 상담,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⁵⁾

3) 본 통계는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보고된 산업재해 발생 현황으로써,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산업재해와 구별됨

4) 서울시교육청 급식종사자 산업재해 형태별 현황(2022~2024년)

산업재해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치료 후 복직하는 급식종사자에 대한 업무 범위나 내용 조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이는 다른 시도교육청도 유사한 상황 상황입니다.

다만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최근 ‘업무적합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복직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업무를 배정하고 있습니다.⁶⁾

- 이와 같은 측면에서 안 제6조제3항과 같이 산업재해로 인해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업무 범위와 내용을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는 결원율이 높은 급식실 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직무 적응도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러한 의견 수렴 및 업무 조정 절차는 학교 급식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명확한 기준과 운영 지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조리실 공기질 관리(안 제9조)에 대한 검토

- 안 제9조제1항은 교육감이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조리과

연도	급식종사자 재해발생 형태별 건수							합계
	이상온도 접촉	넘어짐	절단베임 찢림	물체에 맞음	부딪힘	근골격계 질환	기타	
2022	23	18	10	6	6	18	14	95
2023	41	27	7	13	5	5	12	110
2024	49	35	6	20	7	16	12	145

5) 서울특별시교육청,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사업 확대(2025.3.17.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6) 울산교육청, 올해부터 업무 적합성평가 첫 도입...질병, 부상 후 복귀 현업근로자 원활한 업무 적응 도와(시사인투데이, 2025.3.20.)

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차단하거나 차감할 수 있는 환기설비 등을 조리실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기설비의 구체적인 설치 목적을 명시하고, 환기설비의 기능적 요구(유해물질 차단·감소)를 분명히 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즉 ‘조리흙⁷⁾(cooking oil fume)’은 조리종사원의 폐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실제 서울시교육청 소속 급식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폐질환 검사 결과에서도 다수의 폐질환 결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표-4] 서울시교육청 조리종사원 대상 검진결과⁸⁾ (2025. 3. 기준)

(단위: 명)

연도	대상자 수	검진자 수	1차 검진결과			2차 검진결과
			양성결절	경계선결절	폐암 의심	폐암 확진
2022	7,400*	6,873	2,669	198	99	11
2023	500**	161	52	3	-	-
2024	899***	769	275	23	6	10
합계		7,803	2,997	224	105	21

* 검진대상은 고용노동부 기준(10년 이상 경력 또는 55세 이상) 보다 확대하여 공사립 급식종사자 전부 포함

** 검진 대상자수는 '22년 7,400명 중 미검진자 약 500명임

*** 2022년 3월 이후 신규 채용된 급식종사자

- 이러한 급식실 내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창문을 통한 자연환기, 환기설비 개선, 조리메뉴 조정(조리흙 유발 요리 최소화)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⁹⁾

- 여기서 말하는 “환기설비”란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조리흙을 조리실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 장치

7) 조리흙(cooking oil fume): 온의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와 유증기에 포함되는 유해물질과 미세입자 등을 통칭함

8) 2022, 2023 통계: 2024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 2024 통계: 의원 요구자료

9)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

등 모든 관련 설비를 포함하며,¹⁰⁾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환기설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 제약 및 학교별 시설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해 여전히 현장에서는 환기설비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실정입니다.¹¹⁾

[표-5] 서울시교육청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현황

구분	대상 학교수(교)			소요액(억원)			비고
	전면	환기	계	전면	환기	계	
2023년	-	41	41	-	80	80	시범사업
2024년	27	43	70	221	110	331	

- 따라서 안 제9조제1항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환기설비 설치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하고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4469, 2025. 4. 9.).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3.8.)

11) '죽음의 급식실' 여전해...현장은 '인력·환경 개선' 요구 多(메트로신문, 2023.1.4.)

서울시교육청, 급식실 환기 개선예산 76% 삭감...급식노동자 건강 직격탄(경향신문, 2024.11.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을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수렴할 수 있다”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우”를 “경우 해당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듣고”로, “범위 및”을 “범위와”로, “조정할 수 있다”를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조리실 내에”를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으로, “설치”를 “조리실 내에 설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u>학교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u>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u> -----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급식종사자 등의 의견을 <u>수렴할 수 있다</u>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반영</u> <u>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
제6조(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등) ① · ② (생략) ③ 학교장은 급식종사자가 산업재해 등으로 학교급식 제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업무의 <u>범위 및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u> .	제6조(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경우 해당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듣고</u> ----- <u>범위와</u> ----- ----- <u>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
제9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u>조리실 내에</u> 적절한 환기설비 등을 <u>설치하여야 한다</u> . ② (생략)	제9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① ----- ----- <u>조리</u> <u>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u> --- <u>조리실 내에 설치</u> ---. ② (현행과 같음)